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2. 19(금) 10:00

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
(경제환경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5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2. 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2. 8.

## 2. 제안이유

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, 공동사업을 발굴·추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나. 구성(안 제3조)

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

※ 2021. 2. 기준 구성 현황 : 51개 지자체(의회 의결절차 진행중인 지자체 포함)

### 다. 조직(안 제4조)

- 1) 회장 1명, 부회장 1명 이상
- 2)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, 임기 1년, 연임 가능

### 라. 회의(안 제5조)

- 1) 총회는 정기회의(상·하반기 각 1회)와 수시회의로 구분
- 2)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
- 3)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배포

다. 협의사항(안 제6조)

- 1) 문화, 관광, 보건의료, 체육, 학술, 환경,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
- 2)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, 연구,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3) 국내·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4)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- 5)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

바. 협의사항의 조정, 사무처리 효력(안 제8조~안 제9조)

- 1)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
- 2) 협의회의 구성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

사. 실무협의회(안 제10조)

- 1)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음
- 2) 위원은 관계 지자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(급)으로 구성
- 3)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, 임기 1년, 연임 가능

아. 자문위원, 사무국(안 제11조~제12조)

- 1)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,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
- 2)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필요시 남북협력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

자. 경비부담(안 제13조)

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

차. 회계연도 및 결산(안 제15조)

- 1) 회계연도 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2)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- 2)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동의안 제안 이유

본 동의안은 우리 구청이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 가입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### 나. 주요 내용

- 본 안건의 규약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음.

#### 「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」 개요

- 설립근거 : 지방자치법 제152조
- 성 격 : 행정협의회
- 구 성 일 : 2020. 5. 11
- 회 원 : 51개 지방자치단체
- 임원구성 : 회장 1명, 부회장 1명 이상(임기 1년, 연임가능, 추후 선출 예정)
- 주요기능
  - (기반구축) 조례·제도개선 방안연구,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지원 등
  - (역량강화) 실무자 역량강화교육, 남북교류협력 각종 포럼 개최 등
  - (공동협력) 지자체 간 공동사업 발굴 추진
- 운 영 비 : 경기도 임시부담(2021년도 30백만원)
  - ※ 분담금 합의 시 다음 연도부터 추진

#### 다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성격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95조(행정협의회 구성 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